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264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00908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26458 판결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중

변론 종결2021. 11. 18.

판결 선고2022. 2.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65,000,000원의 한도에서,

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7.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74,37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21. 8.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74,37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B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 피고와 사이에 B의 C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9. 1. 17.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 아파트'라고 하고, 'C 아파트'와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증여계약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 피고와 사이에 B의 E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2. 안양세무서장에게 C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65,000,000원, E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74,37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5. 24. C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9. 28. C 아파트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9. 8.까지 체납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223,680,880원이다(이하 B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08-08-31	4,818,870	5,705,000
2	개별소비세	2008년6월	2008.5.31.	2008-09-30	1,877,110	895,070
3	개별소비세	2008년5월	2008.4.30.	2008-09-30	931,110	440,900
4	개별소비세	2008년7월	2008.6.30.	2008-10-31	1,431,360	2,266,890
5	부가가치세	2007년2기	2007.12.31.	2008-10-31	1,519,630	343,140
6	개별소비세	2008년8월	2008.7.31.	2008-11-30	1,303,490	2,064,390
7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08-11-30	5,249,670	9,186,560
8	사업소득세	2008년8월	2008.9.10.	2008-11-30	482,630	497,100
9	개별소비세	2008년9월	2008.9.30.	2008-12-31	1,559,550	2,469,720
10	사업소득세	2008년9월	2008.10.10.	2008-12-31	701,400	722,440
11	개별소비세	2008년10월	2008.09.30.	2009-01-31	1,216,740	1,253,230
12	사업소득세	2008년10월	2008.11.10.	2009-01-31	475,650	18,780
13	개별소비세	2008년11월	2008.10.31.	2009-02-28	153,190	157,780
14	개별소비세	2008년12월	2008.11.30.	2009-03-31	2,219,080	3,514,440
15	부가가치세	2008년2기	2008.12.31.	2009-04-30	2,324,590	4,067,720
16	부가가치세	2008년2기	2008.12.31.	2009-06-30	2,049,170	3,586,040
17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09-08-31	156,850	161,540
18	부가가치세	2008년2기	2008.12.31.	2009-08-31	982,740	812,220
19	개별소비세	2008년12월	2008.11.30.	2009-08-31	1,110,280	1,143,580
20	개별소비세	2009년2월	2009.1.31.	2009-08-31	3,508,710	5,556,770
21	개별소비세	2009년1월	2008.12.31.	2009-08-31	12,868,920	22,520,180
22	부가가치세	2009년1기	2009.6.30.	2009-09-30	14,080	14,500
23	부가가치세	2009년1기	2009.6.30.	2009-09-30	7,790,350	13,632,860
24	부가가치세	2008년1기	2008.6.30.	2009-10-31	1,073,360	1,878,360

1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08-08-31	4,818,870	5,705,000
25	부가가치세	2006년1기	2006.6.30.	2009-10-31	2,825,720	4,944,490
26	부가가치세	2007년1기	2007.6.30.	2009-10-31	3,669,820	6,421,710
27	특별소비세	2006년1월	2005.12.31.	2009-10-31	3,246,970	1,864,710
28	부가가치세	2008년2기	2008.12.31.	2010-02-28	4,773,300	8,352,490
29	부가가치세	2009년1기	2009.6.30.	2010-02-28	16,245,470	28,429,230
30	부가가치세	2008년2기	2008.12.31.	2011-12-20	2,584,790	4,522,930
31	종합소득세	2006년	2006.12.31.	2010-08-31	10,538,780	17,992,770
32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10-08-31	17,482,290	30,593,550
33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10-08-31	21,514,170	37,649,790
합계			138,699,840	223,680,8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5. 12. 3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되거나 과세물품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4. 24. B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G 주식회사에 통지하였고, 2009. 6. 9. B의 H은행에 대한 예치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H은행에게 통지하였으며, 2012. 7. 10. B의 I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I은행에게 통지하였고, 2013. 6. 13. 및 2015. 7. 23. B의 J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J보험에 통지하였으며, 2016. 8. 22.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한 사실, 현재까지 위 각 압류는 해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B는 C 아파트의 분양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과 발코니 확장비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5,000,000원을 납부하였고, E 아파트의 분양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과 발코니 확장비의 계약금)으로 합계 74,370,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납입금액 위 65,000,000원 + 74,370,000원) 및 예금채권 1,494,778원을 합한 140,864,778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223,680,88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본 것처럼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거의 재산 전부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 10년 넘게 별거 중으로서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되었는바 B의 세금 체납에 따른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증여세도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14, 15호증, 을

제7,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와 B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2016. 5. 12. B의 모친(피고의 장모)인 K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L 아파트 M호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인 같은 달 27. B가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피고, 피고와 B의 딸인 N은 피고가 2010년경 B와 별거하기 시작한 후에도 꾸준히 B와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2017. 10.경부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 또는 N의 자금으로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일부 납부한 것도 B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매수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편의상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매매 또는 증여 등이 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4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C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의 가액은 B가 그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65,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E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의 가액은 B가 그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74,370,000원이며,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각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9. 8.) 기준

223,680,880원으로서 위 각 수분양권의 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C 아파트에 대한 그 증여계약 당시 수분양권의 가액인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E 아파트에 대한 그

증여계약 당시 수분양권의 가액인 74,3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39,370,000원(= 65,000,000원 + 7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와 N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 자체이고, 이에 대한 각 증여 이전까지의 법률상 권리자는 B이며, 그

납입대금을 실질적으로 피고 또는 N이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각

아파트 수분양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기주

판사김성래

판사심용아

별지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인 경기 군포시 ○아파트 P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일부 납입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수분양권의 가액 산정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까지 피고가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중도금 대출 액수를 제외하였다.